

서식 V-17 계약제교원(강사) 채용계약서 (예시)

계약제교원(강사) 채용계약서

계약제교원(강사)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“사용자”라 하고, 계약제교원(강사)을 “근로자”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계약당사자)

(사용자) 주 소	학교장
(근로자) 주 소	
	성명
	주민등록번호

제2조(임무) 계약제교원(강사)로 근무하는 “근로자”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근로자”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.
-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.

제3조(계약기간)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채용구분) “근로자”는 ○○○학교의 “강사”로 채용되어 근무한다.

제5조(보수지급방법)

- ① “계약제교원 강사 수당 편성 기준” 및 “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”에 의거 “근로자”的 시간당 강사료는 ○○원으로 하고,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,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, 주민세를 원천 징수한다. 다만, “근로자”的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보수는 매월 00일에 지급한다.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- ③ “근로자”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나 질병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.

제6조(사직)

- ① “근로자”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.
- ② “근로자”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○○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“사용자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